

# 검 토 보 고 서

## I 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2033호, 2021년도 **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**은 2020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## II .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

### 1. 기금 개요

- **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**은 남북 교육·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의 안정적 확보를 목적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2020년도에 설치된 기금임
- '21년도 동 기금의 조성규모는 15억 5,000만원으로 금년도 조성규모(10억원) 보다 55.0%, 5억 5,000만원 증가된 규모로 제출됨

〈표 2-1〉 기금 조성규모

(단위 : 백만원, %)

기 금 명	2020년도말 조성액 (A)	2021년도기금운용계획		2021년도말 조성액 (B=A+㉠-㉡)	증 감	
		수입㉠	지출㉡		증감액 (C=B-A)	증감률 (C/A)
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	1,000	1,000	450	1,550	550	55.0

○ 기금수지총액은 20억원으로 '20년도(10억원) 보다 100.0%, 10억원 증가한 규모임

〈표 2-2〉 기금 수지 총괄

(단위 : 백만원, %)

수 입 계 획					지 출 계 획				
항 목	2021년도 수입액	2020년도 수입액	증 감		항 목	2021년도 지출액	2020년도 지출액	증 감	
				비율					비율
합 계	2,000	1,000	1,000	100.0	합 계	2,000	1,000	1,000	100.0
전입금	1,000	1,000	-	-	비용자성 사업비	450	-	450	순증
예치금 회수	1,000	-	1,000	순증	예치금	1,550	1,000	550	55.0

## 2. 검토내용

### (1) 기금의 존속기한

-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조례에 명시하고,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
- 동 기금은 존속기한을 '최초 설치일로부터 5년'으로 조례에 명시하고 있어, 서울시의회가 동 기금운용계획을 최초 의결한 날인 2020년 6월 30일로부터 5년에 해당하는 2025년 6월 29일까지 설치·운용되는 것으로 판단됨

### (2) 기금 수지현황

- 수입계획의 경우, '20년도말 기금조성액(10억원)과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(10억원)을 수입으로 계상하여 총 20억원으로 계획하고,

〈표 2-3〉 기금 수입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21년도 수입액	2020년도 수입액	증 감
합 계	2,000	1,000	1,000
예치금회수	1,000	-	1,000
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	1,000	1,000	-

- 지출계획은 정책사업중 북한체험학습추진(1억원),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(2억원) 등의 사업에 4억 5,000만원을 계상하고, 나머지 여유재원 15억 5,000만원을 예치금으로 지출계획한 것임

〈표 2-4〉 기금 지출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부문	정책	단위	세부	사업내역	'21년 지출액	'20년 지출액	증 감
합 계					2,000	1,000	1,000
유아및 초중등교육					450	-	450
				교수-학습활동지원	450	-	450
				학생생활지도	450	-	450
				학생생활지도지원	450	-	450
				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	450	-	450
				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	450	-	450
				북한체험학습추진 <sup>주1)</sup>	100	-	100
				남북교육교류 환경조성	80	-	80
				남북교육교류사업 <sup>주2)</sup>	200	-	200
				위원회 참석 수당	6	-	6
				기타운영수당	3	-	3
				일반수용비	3	-	3
				행사운영비	5	-	5
				남북교육교류국외여비	50	-	50
				업무추진비	2	-	2
예비비					1,550	1,000	550
				예비비및기타	1,550	1,000	550
				예비비및기타	1,550	1,000	550
				예치금	1,550	1,000	550
				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	1,550	1,000	550
				예치금	1,550	1,000	550

※ 주1) 금강산, 개성 등 교원 사전답사단 파견 및 학생 참여 시범 사업 추진  
 주2) 유관기관 및 타부서 등과 협력하여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지원

### (3) 기타 검토

#### 1)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기금운용계획을 미리 반영

-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
  - 동 기금의 경우, '20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'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시에 제출한 것은 물론 '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결과를 단정하여 미리 '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
  - 사업부서에서는 동 기금변경안이 금번 정례회시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'2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일 수 있으나 기금에 대한 의결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사업부서가 의회의 의결결과를 예단하여 '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미리 반영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사권한을 침해한 행태로 판단됨

#### 2) 적정 세부사업 편성을 위한 세출구조 개선요구

- 예치금은 기금의 고유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유동적 지출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, 동 기금의 경우 단위사업 '예비비 및 기타' 내 세부사업 '예치금'을 신설하여 15억 5,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
- 교육부의 「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」에 지출계획중 '분야·부문'은 「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이 정하는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구조에 따라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,

- 사업부서로서는 현행 교육부 기준에는 예치금을 편성할 적절한 세부사업이 없고, 상대적으로 '예비비 및 기타'를 가장 근접한 단위사업으로 판단하여 해당 단위사업 내에 임의로 세부사업을 신설한 것으로 사료됨

○ 사업부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구축·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장치 (지방교육행·재정통합시스템)를 활용하여 기금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,

- 동 시스템은 교육부 훈령으로 정하는 '정책사업-단위사업-세부사업'에 한정하여 예산구조를 설정하고 있어 실제 기금회계 처리시 의회 승인내역인 신설 세부사업과 다른 세부사업을 임의로 활용하여야 할 것인 바, 의회의 승인 내역과 실제 운용내역이 상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

- 교육부에 사업별 예산구조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여 예비비를 적정 예산과목에 편성하고, 실제 집행시 승인내역대로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행·재정통합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